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코람코자산신탁

2. 조치일 : 2022. 4. 27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경영유의사항 4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감사조직 관련 내부통제 강화

□ ㈜코람코자산신탁 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추어야 하나

○ 검사기준일 현재 ●명(팀장 △명, 팀원 △명)으로 구성된 감사부서에서 감사 및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감사부서의 인력보충 또는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하여 감사기능 등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(2)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관리 강화

□ ㈜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자 등이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팀에서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고 있어 분양대행업체의 사기 등에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

○ 분양대행업체 선정시 위탁자 추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팀 심사 후 리스크관리팀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3)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통제 강화

□ ㈜코람코자산신탁은 업무용 외부 메신저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은 유지하고 있으나,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룹메신저에 대해서는 통신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이 미기록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투자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적정성 점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

○ 그룹 메신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시 통신기록 등을 유지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

(4) 수익권증서 관리 강화

□ ㈜코람코자산신탁 내규 「부동산담보신탁업무규정」, 「분양관리신탁업무규정」, 「토지신탁업무규정」 등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익권증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하나

○ 검사기준일 현재 ▣▣▣개의 수익권증서가 미회수된 상태이므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익권증서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수익권증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